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
2023.3.10.(금)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 199
발의일자 : 2023. 2. 24.
회부일자 : 2023. 2. 28.



문 화 환 경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성태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박홍열 의원 외 14명

2. 제안 이유

- 산림은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재와 연료 등을 제공하고, 또한 국토보전·수자원함양·자연 순환에 도움을 주는 소중한 자원임
- 산림자원의 가치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의 잠재력을 발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산림자원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 3조)
-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계획 수립 규정(안 제5조)
-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사업과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 6조~제7조)
- 산림자원 육성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규정(안 제8조)

4. 참고사항

- 예산수반(비용추계서) : 미첨부 사유서 붙임

- 법제심사(입법정책담당관실) : 붙임
- 규제개혁 심사(법무혁신담당관실) : 해당하지 않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실) : 부패 유발요인 없음
- 해당부서 의견(산림자원과) : 붙임
- 입법예고기간 : 2023년 2월 28일 ~ 3월 6일
-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제11조, 제22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5.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

- 경상북도 전체 면적(1,903,403ha)의 70.07%(1,333,691ha) 를 차지하는 산림¹⁾은 중요한 생태자원이자 경제자원입니다. 산림자원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산림자원을 보존할 뿐 아니라 축적한 산림자원을 이용하여 경제적 효용과 산림휴양, 수원함양, 산지재해 방지, 탄소흡수 등 사회적 효용에 이르기까지 산림자원이 도민에게 주는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 산림청. 2020년 산림기본통계.

-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으로,
- 타 시·도의 산림자원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례를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2017.12.29.), 경기도(2022.3.4.), 충청남도(2022.4.11.) 등 3개 도에서 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1조**는 목적규정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됨을 명시하면서 경상북도의 산림자원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강화와 친환경 생활자재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안 제2조**는 “산림자원”과 “임업인”에 대한 용어정의 조항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²⁾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임업인의 범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4.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산림자원 용어의 정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산림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자원으로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유용한 것을 말한다.

가. 산림에 있거나 산림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목, 초본류(草本類), 이끼류, 버섯류 및 곤충류 등의 생물자원

나. 산림에 있는 토석(土石)·물 등의 무생물자원

다. 산림 휴양 및 경관 자원

- 안 제3조는 산림자원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국가 등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2에 따른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산림의 경영·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5조는 '경상북도 산림자원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산림자원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 절차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획수립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것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산림경영계획) 계획기간 10년, 「산림기본법」 제11조(산림기본계획) 에서는 계획기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6조**에서는 산림자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술개발 및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창업지원, 판매 및 수출촉진 사업,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팀구성, 정책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수출촉진 사업 등 이는 주무부서(산림자원과)와 산림자원개발원에서 기 추진 중인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 제7조**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기관·단체 등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절차는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인 임업인·기관·단체 등의 범위와 기준이 지원사업별로 상이해 질 수 있어, 세부 지원기준 마련 등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 제8조**는 산림자원 육성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기술이 발굴 및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고부가가치 산림자원 활용기법 연구, 인공지능·디지털활용 산림지리정보시스템 등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산림자원 관리가 요구되고 있어 필요한 조문이라 사료됩니다.

□ 종합 의견

- 우리나라 산림과 임업은 산림의 노령화 진행, 순임목생장량 감소, 낮은 임가소득, 농·산촌 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본 조례 제정으로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선순환 구조의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 또한 관련법령에 부합하고 있고, 입법 예고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반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산림자원의 육성계획 기간을 상위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본 조례안에 따른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대상에 대한 명확한 지원기준 등 세부지침 마련을 통해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붙임. 1. 전국 시·도별 산림면적·축적 현황
2. 경북도 임업인 관련 현황
3. 경북도 산림자원 육성 관련 주요사업 현황

붙임 1

전국 시·도별 산림면적·축적 현황

(단위 : 면적(ha), 축적(m³), 산림율(%), 평균 임목축적(m³/ha))

구분	면적	산림면적	임목축적	산림율	평균 임목축적
서울	60,523	15,323	2,282,684	25.32	148.97
부산	77,007	34,926	6,268,223	45.35	179.47
대구	88,349	48,338	8,745,821	54.71	180.93
인천	106,523	39,373	5,705,792	36.96	144.92
광주	50,113	18,944	2,806,238	37.80	148.13
대전	53,966	29,764	5,006,992	55.15	168.22
울산	106,209	68,001	11,401,826	64.03	167.67
세종	46,491	24,849	3,839,903	53.45	154.53
경기	1,019,527	512,105	81,057,717	50.23	158.28
강원	1,682,968	1,366,644	250,792,917	81.20	183.51
충북	740,695	488,337	78,091,550	65.93	159.91
충남	824,617	404,097	59,154,844	49.00	146.39
전북	806,984	440,746	71,494,501	54.62	162.21
전남	1,234,809	686,852	88,048,613	55.62	128.19
경북	1,903,403	1,333,691	228,240,999	70.07	171.13
경남	1,054,055	698,810	124,449,446	66.30	178.09
제주	185,021	87,334	13,059,207	47.20	149.53

*자료: 산림청. 산림임업통계(2020)

붙임 2

경북도 임업인 관련 현황

구 분	전 국	경 북		비 고
임 가 수	103,416가구	20,334가구	20%	' 21 산림임업통계
전업임가	14,038가구	3,228가구	23%	' 21 산림임업통계
겸업임가	89,378가구	17,106가구	19%	' 21 산림임업통계
임가인구	232,817명	43,487명	19%	' 21 산림임업통계
산림조합원	813,547명	149,758명	35%	' 21년 12월 기준
독 립 가	1,145명	163명	15%	' 22년 6월 기준
임업후계자	21,917명	2,869명	13%	' 22년 6월 기준
사유림 산주수	2,181,212명	340,744명	16%	' 21 산림임업통계
귀산촌인	59,294명		1	' 21 산림임업통계

- * 귀산촌인 : 동(洞)지역에 1년이상 거주한 사람이 산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귀촌인
- * 산촌 : 해당 읍·면 산림면적 70% 이상, 인구밀도 읍면 평균(106명/km²) 이하, 경지면적 평균(19.7%) 이하
- * 산촌현황 : (전국) 109개 시·군 466개 읍·면 / (경북) 23개 시·군 114개 읍·면(332개 리동) 24%

□ 2023년도 산림자원 육성 관련 주요사업

- 조림사업
 - 위 치 : 포항시 등 22개 시군(제, 울릉)
 - 사 업 량 : 3,826ha
 - 사 업 비 : 50,208백만원(국비 25,896, 도비 7,110, 시군 16,410, 자부담 792)
 - 사업내용 :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산불피해복구조림 등

- 숲가꾸기사업
 - 위 치 : 포항시 등 23개 시군
 - 사 업 량 : 28,140ha
 - 사 업 비 : 70,824백만원(국비 35,449, 도비 10,743, 시군 24,632)
 - 사업내용 : 정책숲가꾸기, 공익림가꾸기, 사회적일자리

- 임도사업
 - 위 치 : 포항시 등 22개 시군
 - 사 업 량 : 452km
 - 사 업 비 : 28,618백만원(균특 15,342 도비 6,012, 시군 7,264)
 - 사업내용 : 간선임도, 산불진화임도, 작업임도, 구조개량 등

- 산림소득사업
 - 위 치 : 포항시 등 23개 시군
 - 사 업 량 :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청정임산물이용증진, 임산물수출촉진
 - 사 업 비 : 23,087백만원(국비 7,307, 도비 2,369, 시군 5,528, 기타 7,883)
 - 사업내용 :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14종